

세무학회지
제7권 제3호 2006년 9월 pp.241~271
한국세무학회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에 관한 연구*

오기수**

<요 약>

본 논문은 이러한 조선시대 조세제도에서 재정확보와 올바른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처벌규정의 내용은 어떠하며, 그 집행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여, 조선시대 조세범처벌 법규와 절차를 세무학적 접근에서 이해하고 통찰하는데 기여하고, 조세범처벌 형량의 과중과 형 집행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의 변화는 우선적으로 재정수요충족의 측면을 중요시하면서 조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체제의 미비와 관리들의 농간 등으로 항상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납세자인 농민의 피해가 많았다. 그 결과 조세범의 조세범처벌 규정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성종 16년(1485년)에 반포된 영세 불변의 조종성현으로서 통치의 기본법인 「경국대전」, 호전 수세조에는 조세범의 처벌에 대해서 단 두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국대전」이 편찬된지 약 261년 후인 영조22년(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 호전의 수세조와 양전조에는 조세범처벌 규정이 대폭 추가되어 각각 9조문과 12조문으로 늘어났다. 조선시대 조세범처벌 형량을 「경국대전」과 「속대전」에서 살펴보면 가장 가벼운 형량은 태형인 태10부터이며, 가장 무거운 형량은 유형(流刑)인 장1백과 유형 3천리이다. 조선시대 조세범을 처벌은 양전 때와 수세 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전할 때 감관(監官) 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한 경우,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한 경우, 또는 밭 모양을 실지와 다르게 한 경우, 사사로움에 따라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에는 매 1부에 대하여 태형 10에서 장1백에 그치고 통산하여 1결에 달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세할 때 거짓으로 속여서 곡식이 알찬 것을 재해를 입었다고 한 경우에는 10부 이상이면 경작자 및 면·이입(里任)으로서 이에 한통속이 된 자는 장1백 유형3천리에 처하며 감관(監官)·색리(色吏)는 장 1백에 처한 후 충군(充軍)한다. 그리고 토호로서 전세를 불납하거나 상납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 1백과 유형3천리에 처한다. 양전시 감관(監官) 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한 경우,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한 경우 등이 통산하여 1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결의 전세는 4두로 현재의 쌀가치로 환산하면 약 28,552원 정도이다(전답 1결에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약 28두로 계산한 경우는 199,864원 정도이다). 수세조의 형량은 양전조의 형량보다 10배정도 무거웠다. 조선시대 조세포탈범·방화범·상해범의 죄는 형량이 장1백과 유형 3천리로 같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최고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조세범처벌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화범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최고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형법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해범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최고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형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은 불완전한 전세제도와 조세법에 대한 과중한 처벌규정, 그리고 관리와 귀족 등의 조세저항 등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주제어> 조선시대, 조세사, 전세, 조세범

* 이 논문은 한국세무학회 세무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김포대학 세무회계정보과 부교수, okyes@kimpo.ac.kr, 011-289-8143

논문접수일 : 2006년 7월

게재확정일 : 2006년 9월

I. 서 론

1. 연구목적

한 나라의 조세는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정수요충족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의 조세제도는 국가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역시 조세의 근본 목적인 재정수요충족을 위하여 전세(田稅)를 근간으로 하여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시대의 조세는 왕의 절대적 과세권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왕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가지고 조세법의 제정과 조세의 징수, 그리고 조세법의 처벌까지 하였다. 다음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임금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백성은 곡식과 쌀과 명주와 베를 바쳐 임금은 섬기는 사람이며, 임금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법도가 있고 백성이 세금을 바치는 데는 한도가 있습니다.(연산 040 07/01/30(기묘))”.

이 내용은 조세란 백성이 섬기는 왕에게 바치는 재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왕과 백성이 주종 관계에 놓여있는 절대군주 시대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왕이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법도가 있고 백성이 세금을 바치는 데는 한도가 있다고 하여 법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되 적절한 조세를 부담시킨다는 조세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조세원칙 중 가장 중요한 조세공평의 개념은 균등이라는 개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균등이란 개념은 영조가 직접 쓴 「속대전」 호전의 제목 즉, 「均貢愛民 節用蓄力(균공애민 절용축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세를 균등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힘을 축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는 이러한 이상과는 달리 법체제의 미비와 관리들의 농간 등으로 항상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납세자인 농민의 피해가 많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선시대 조세제도에서 재정보호와 올바른 조세행정을 위하여 조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처벌규정의 내용은 어떠하며, 그 집행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여, 조선시대 조세법처벌 법규와 절차를 세무학적 접근에서 이해하고 통찰하는데 기여하고, 조세법처벌 형량의 과중과 형 집행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조선시대 조세법 처벌에 대한 선행연구는 접근할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시대 조세법처벌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조(刑曹)의 행형(行刑)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행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신흥재(1987)의 「조선시대 흘형에 관한 고찰」과 김기춘(1990) 편저한 「조선시대형전(朝鮮時代刑典) : 경국대전형전(經國大典刑典)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이 편저한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 흘형(恤刑)을 중심으로」 등이 있

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형사규정 및 형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행형제도를 이해한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세범 처벌규정을 살펴볼 수 없지만 조세범처벌의 행형제도를 이해하는 데는 필요한 자료라고 본다.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흘형을 중심으로」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형과 형사사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흘형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조망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전통 흘형이야말로 세계 형사사법제도의 보편적 가치로 내세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념이라고 믿고 있으며, 특히 이번 흘형 연구를 통하여 우리 행형과 형사사법의 정체성이 민본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조세범처벌에서도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행하여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행형제도 연구는 주로 조선시대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과 「대명률직해」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경국대전」 및 「속대전」의 형조에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형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범처벌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호조에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 형량의 과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호조의 조세범 형량과 형조의 형량을 비교함으로써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이 공평하게 집행되었는지는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및 「목민심서」등에서 실린 조세범처벌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논문은 「경국대전」과 「속대전」등의 법원(法源)을 분석하여 조선시대의 조세범처벌의 제도와 규정, 형량 등을 분석하고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목민심서」등에서 실린 조세범처벌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법제도의 일반적 고찰

1. 조선시대의 입법

조선시대 법의 특징은 명나라의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겠다. 즉, 고려가 주로 당·송율(唐·宋律)을 계수하되 개별적인 왕법과 관습법을 기반으로 집권체제를 유지하였다면, 조선은 명나라의 「대명률」을 포괄적으로 계수하되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꾸준한 보완 및 제정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일법전을 편찬하려고 계속 노력하였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사회로 왕명이 곧 법률이 되고, 행정명령이 되고, 판결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모든 법률은 왕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왕의 명령은 교(敎)·판(判)·제(制)라 하고, 그 내용이나 문서는 왕지(王旨)·상지(上旨)·판지(判旨)·교지(敎旨)라 하였으며, 하달된 왕명을 받들어 전달하는 것을 전지(傳旨), 왕지나 교지를 아래에 시달하는 것을 하지(下旨) 또는 하교(下敎)라 하였다(김기춘 1990, 20).

조선시대에 있어서 입법은 ‘교(敎)’라고 표현되는 국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색이 있

다. '敎(교)'의 구체적인 방식이 교지 또는 전지이며, 이러한 명령을 각 관아에서 받게 되면 이를 수교(受敎)라 한다. 이 수교를 법조문화한 것이 조례·조령·조건 등이다. 각 관아에서 이것을 년월일을 붙여 모아 놓으면 등록(騰錄)이 되는 것이다. 세월이 경과하면서 등록 상호간의 모순이나 중복,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과 편의에 따라 준용해야 할 것과의 구별이 생겨남으로써 법령 상호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전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전의 편찬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관아에 등록되어 있는 수교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 가운데 일시적인 법령(權宜之法)과 영구적인 법령(經久之法)을 각각 구별하여 후자만을 육조(六曹)별로 정리하여 모으는 과정이 핵심이다. 조선 초기에 여러 차례의 속육전 편찬과정에서 나타난 조종성헌준수의 원칙¹⁾과 법전 법령집 구분의 원칙²⁾이 이러한 것이었고, 이후 조선시대 법전편찬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입법은 수교시행(受敎施行)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에는 국왕이 자발적으로 명을 내리는 경우와 해당기관이나 중신이 상주(上奏)하면 왕이 윤허하는 형식의 두 가지가 있었다. 입법의 과정에는 역대 왕들이 매우 신중을 기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신법제정에 관하여 의정(議政)이나 육조(六曹)의 건의가 있으면 의정부의 심의를 거치고, 다시 사헌부와 사간원(司諫院)에 회부하여 서경(署經)이라는 인준절차를 거쳐야만 예조(禮曹)가 이를 공포하였다. 특히 개정이나 보완이 아닌 신법의 제정시에는 의정부를 비롯한 많은 관계기관의 신중한 협의 및 합의절차를 거쳐 국왕의 윤허가 있는 다음에만 시행하였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무릇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에 전하여도 폐단이 없는 연후에야 가히 법이라 할 수 있는지라 각사(各司)의 관리들이 제각기 소견을 가지고 신법제정을 좋아하니 해당 관리들이 이를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폐단 또한 전과 같으니, 앞으로는 각사에서 신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가행(可行)할 수 있는가를 깊이 검토하여 국왕의 판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할지니라.”하였다(태조실록 제8권, 태조 4년(1404년) 10월 28일).

2. 조선시대 주요 법전

가. 경제육전

태조는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 명하여 태조 6년(1397년) 12월에 경제육전이라는 법전을 펴냈다. 이는 그가 실권을 장악한 무진년(1388년) 이후부터 태조 6년에 이르기까지 발표하였던 각종 조례를 모아 육전의 형식으로 편찬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이다. 「경제육전」의 작업은 조준(趙浚)이 주도하였으며, 이두를 사용했으므로 「이두육전」이라고도 한다. 「경제육전」 발행 다음 해부터 1407년(태종 7)까지 새로 추가한 법령을 하륜(河崐)·이직(李穡)이 찬집하고, 이두를 모두 한문으로 바꿔 1415(태종 15)에 「경제육전원집상절」과 「경제육전속집상절」이란 2책으로 간행했다. 이후로 조준의 법전을 「원전」 혹은 「원육전」, 이후에 편찬한 것을 「속육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 元典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그 조문 밑에 고쳐야 할 내용만을 각주로 명기하는 방식

2) 영구히 시행해야 할 ‘경구지법’은 전(典), 편의에 따라 시행해야 할 ‘권의지법’은 록(錄)으로 구분하는 방식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즉, 「원육전」과 「속육전」사이 및 이들 법전과 새 법령 사이에 모순이 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이 생기는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종 15년(1415년) 8월에 중대한 원칙이 발표된다. 즉, 모든 법령은 한결같이 원전의 규정을 본위로 하여야 하며, 원전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개정된 속전의 규정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전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그 조문 밑에 각주를 작게 표시함으로써 법의 통을 유지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제30권, 태종 15년(1415년) 8월 13일). 이는 법전 편찬에 있어서 원전존중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원전인 경제육전은 개국의 조종이 만든 성헌(成憲)이기 때문에 절대로 존중하여야 하며, 속전이나 후의 법령으로 개폐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조종성헌존중주의(祖宗成憲尊重主義)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서 조선 500년 동안 하나의 기본원칙으로 지켜져 왔다. 경국대전의 원문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김기춘 1990, 28).

나. 경국대전

조선은 건국 후 곧 법전 편찬에 착수하여 태조 6년(1397년) 12월에 「경제육전」을 간행했다. 그러나 바로 개정작업을 벌여 세종 15년(1433년)까지 3번의 「경제육전속전」과 「등록(騰錄)」의 간행이 있었다. 이것은 건국 후 국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과 수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세종 15년 이후에도 이 추세는 여전하였다. 따라서 법조문과 현실과의 괴리, 법조문 간의 모순 현상도 계속되었고, 만세불변의 법전을 편찬하려는 정부의 의도도 실현될 수가 없었다.

이에 세종 6년(1460년) 7월에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과 호전등록을 완성하여 경제육전호전이라 이름지었다. 다음해인 세조 7년(1461년) 7월에는 형전을 완성하고 이를 인쇄하여 공포 시행하였다. 세조 12년에는 나머지 4전인 이전·예전·병전·공전도 완성됨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호전 및 형전과 함께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다음 세조 14년(146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왕이 갑자기 서거함으로써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세조가 사망하자 법전은 다시 수정되었다. 수정본은 예종 1년(1469년)에 일단 완성했으나 예종 역시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법전간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다시 경국대전의 교정을 착수 하여 성종 2년(1471년) 1월에 반포했다. 그 해가 신미년이었기 때문에 이를 「신미대전」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5월에, 예조에서 법전에 수록해야 할 조문이나 「신미대전」에 누락된 조문을 130여 개나 거론했다. 이 결과 누락조문의 보충만이 아니라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진행하여 성종 5년(1474년) 새 법전과 72개조의 「속록(갑오대전)」을 반포했다. 이들 법전간의 내용차이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 수정본들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성종 12년(1481년) 개정 논의가 대두하자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개수사업을 진행하여 성종 16년(1485년)에 최종본을 완성 반포했다. 성종 16년에 반포된 경국대법전은 을사대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영세불변의 조종성헌으로서 통치의 기본법이 되었다(김기춘 1990, 30-31).

「경국대전」은 6조의 직능에 맞추어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 구성하였다. 조선의 행정사무는 모두 6조에 집중되었으며, 6조는 필요한 규정을 국왕에게 비준을 받아 수교(受敎)나 수판(受判)으로 법조문화 했다. 이중 영구히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편집하여 6개의 전(典)으로 묶은 것이다.

- ① 이전(吏典)은 총 29항목으로 국가의 통치기구와 조직체제, 동반의 경·외관직, 아전·토관의 직제와 인사고과제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노인직·추증·급가·한품서용 등 관료제 운영규정이 있다.
- ② 호전(戶典)은 30항목으로 재정·토지·조세·녹봉·공물·양전·부역·토지매매·상속에 관한 규정들을 수록했다.
- ③ 예전(禮典)은 61항목으로 교육·문과와 잡과의 시험규정·외교·의장·오복(五服)·의례에 관한 규정이 주인데, 그밖에 각종 공문서양식과 음악·인장·구호사업 규정과 불교관계 규정을 수록했다.
- ④ 병전(兵典)은 51개 항목인데 경외의 군사기구와 무반직, 무과와 취제 규정, 군사기구 검열과 번상규정, 면역·급보·성곽·역마·봉수(烽燧) 규정을 수록했다. 이 밖에 비상시의 소집과 행동지침, 순찰규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수록해두었다.
- ⑤ 형전(刑典)은 28개 항목으로 크게 형법제와 노비규정으로 나누어진다. 형법제는 형벌과 금령, 각종 형구와 형집행 방법, 재판규정을 수록했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의 전부는 아니다. 형전 첫머리 용률(用律)조에서 대명률³⁾을 사용한다고 규정했는데, 각종 형법은 「대명률」을 따르고, 형전에는 「대명률」과 다르거나 「대명률」에는 없는 법만 수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의 형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명률」을 함께 참조해야 한다.
- ⑥ 공전(工典)에는 도로·교량·도량형(度量衡)·식산(殖産)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속대전

「속대전(續大典)」은 「경국대전」 편찬 이후 최초로 개정된 정식 법전으로 이후의 「대전통편」·「대전회통」과 함께 조선시대 4대법전의 하나이다. 조선시대에 법전에 수록하는 조문은 만세불변의 조문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수교들이 계속 발효되었다. 그결과 「대전속록」·「대전후속록」·「수교집록」·「전록통고」 등 여러 추가법령집이 간행되었다. 이 때문에 법조문 참고가 불편하고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어졌다. 더욱이 임진왜란 이후 사회·경제·법제 모든 면에서 사회가 크게 변동함에 따라 새로운 법전의 편찬이 요구되었다.

숙종 14년(1688년) 박세채(朴世采)가 「속대전」 편찬을 건의했는데, 「속대전」이라는 이름은 이때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법전편찬은 영조대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영조 6년(1730년) 영조는 오래전부터 새 법전 편찬의 뜻을 가져왔음을 밝히고 준비를 명했다. 이후 1740년경부터 편찬작업을 진행하다가 1744년에는 찬집청을 설치하여 최종 편찬에 들어갔다. 영조는 직접 서문을 써서 내릴 정도로 관심이

3) 명의 홍무제(洪武帝)는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1367년 《대명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이를 공포하였다. 이후 《대명률》은 1374년, 1389년, 1397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대명률》의 기본원칙은 당률과 대동소이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이며 사형(死刑)의 경우 교(絞)와 참(斬)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대해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는 등 엄격한 성격을 보여준다. 법률의 적용에서도 당률은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대명률》은 재판 당시의 법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소급처벌을 함으로써 전단적(專斷的) 경향을 지닌다.

높아 법전편찬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특히 형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효수(梟首)는 군법이므로 법전에 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삭제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 완성하여 교정을 거쳐 1746년에 인쇄, 반포했다. 영조의 서문 외에 예문관 직제학이었던 원경하(元景夏)의 서문과 김재로 등이 쓴 전(箋)이 있다.

6전으로 나누고 항목은 「경국대전」을 따랐으나, 수정된 내용만 수록하므로 「경국대전」에 있어도 빠진 것이 있고, 새로 추가한 항목도 있다. 추가된 것은 이전의 잡령, 호전의 창고, 형전의 살옥(殺獄)·검험(檢驗)·간범(奸犯)·사령(赦令)·속량(贖良)·보충대(補充隊)·청리(聽理)·문기(文記)·잡령(雜令)·태장도류속목(笞杖徒流贖木) 등으로 형법관계가 많다. 각 전(典)의 서두에 영조가 직접 8자의 제목을 내려 법의 취지와 지향을 밝힌 점이 특이하다. 일례로 호전에서는 “均貢愛民 節用蓄力”의 제목으로 “세를 균등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힘을 축적한다”라고 정의했다. 이때는 「경국대전」과 별개의 책으로 편찬되었으나, 정조 때 다시 「대전통편」을 편찬하면서 3개 법전을 하나로 합쳤다.

다. 대전통편

국가체제 재정비작업은 이후에도 많은 논란과 변동을 거치며 계속되었다. 또한 「속대전」은 「경국대전」과 별책으로 편찬되어 참조해야 할 법전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 되었다. 이에 정조는 법전을 하나로 통합하고, 「속대전」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전편찬을 명하게 되었다. 「대전통편」은 정조 9년(1785년)에 편찬하여 1786년 1월부터 시행했다. 원래 정조의 구상은 명나라의 「대명회전(大明會典)」처럼 「국조오례의」·「속오례의」 같은 예서(禮書)까지 통합하는 대편찬사업에까지 미쳤으나 이는 이루지 못하고 일단 통합법전만 편찬했다. 체제는 조선시대 법전편찬의 기본원칙대로 기존법전의 체제와 조문을 그대로 두고, 변동된 내용을 「속대전」·「대전통편」 조문 순으로 수록했다. 「경국대전」 조문은 앞에 ‘원(原)’, 「속대전」은 ‘속(續)’, 「대전통편」은 ‘증(增)’자를 표시하여 구별했다. 추가한 조문의 내용과 성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속대전」 규정을 보완하거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
- ② 전랑권(銓郎權) 부활과 같이 「속대전」 규정을 번복·수정한 내용
- ③ 새로 추가한 내용

추가한 조문은 「속대전」 이후의 것만이 아닌 조선 후기에 발효한 여러 수교를 대상으로 했고, 변동이 많았던 내용은 어느 왕 몇 년의 조치라고 주에 표기하기도 했다. 「경국대전」 규정으로 사문화한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두고 ‘지금은 폐지되었다(今廢)’와 같은 설명을 넣었다.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속대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도 모두 찾아 기록해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국가체제 전반을 재구성했다. 「속대전」과 「대전통편」을 비교해보면 항목별로 「속대전」이나 「대전통편」의 조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예전(禮典) 제과조 같은 곳에는 「속대전」 조문이, 이전(吏典) 외관직조 같은 곳에는 「대전통편」 조문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정조 때까지 국가체제 정비작업이 부분별로 계속 진행된 결과이다.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과 국가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마. 대전회통

「대전회통」은 고종 2년에 편찬된 조선왕조법규를 전부 수록한 조선시대 최후의 법전이다. 고종 2년(1865년) 왕명에 따라 조두순·김병학 등이 「대전통편」 이후 80년간 반포 실시된 왕의 교명과 규칙 및 격식 등을 「대전통편」 아래에 추보한 뒤 출판했다. 체제는 주관제도(周官制度)와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모방하여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 나누어 편집했다. 이전 31, 호전 29, 예전 62, 병전 53, 형전 39, 공전 14개 항목으로 총 228개 조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 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편찬한 것이므로 이들 법전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경국대전」의 본문은 ‘원(原)’, 「속대전」은 ‘속(續)’, 「대전통편」은 ‘증(增)’, 새로 보록한 것은 ‘보(補)’자를 음각(陰刻)하여 구별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전반의 각종 제도와 습관을 이해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으며, 특히 일종의 행정 법전으로서 관리가 준수해야 할 각종 규준(規準)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육부분류(六部分類)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사항을 나누지 않았으며, 사인(私人)에 대한 포고와 관리에게 내리는 훈유(訓諭), 의례, 금제(禁制)를 모두 일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또 조종(祖宗)의 유법(遺法)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당시에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법조문을 존속시키거나 대외적 체면을 중요시하여 실행불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대전회통」은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심화된 중세체제의 위기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으로서 그 정비의 전제가 되는 새로운 법전 편찬이 요청되어 편찬한 것이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봉건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갔고, 이러한 체제위기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으로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삼정의 개혁을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따라서 「대전회통」은 체제위기에 대응하여 통치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지배층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조선시대의 형법과 형률

가. 조선시대의 형법

경국대전 형전(刑典)은 28개 항목으로 크게 형법제와 노비규정으로 나누어진다. 형법제는 형벌과 금령, 각종 형구와 형집행 방법, 재판규정을 수록했다. 그러나 이것이 형법의 전부는 아니다. 형전 첫머리 용률(用律)조에서 「대명률」을 사용한다고 규정했는데, 각종 형법은 「대명률」을 따르고, 형전에는 「대명률」과 다르거나 「대명률」에는 없는 법만 수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의 형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명률」을 함께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회통에 따르면 “용률(用律)은 대명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국대전에 의거 대명률을 적용하되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해당 율문(律文)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법전(法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명률(大明律)은 명나라의 형법전(刑法典)이나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의거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형법전(刑法典)으로서 의용(依用)하였다. 대명률은 460개조로서 당률(唐律)을 모방하되 명례률(名例律)·이율(吏律)·호율(戶律)·예율(禮律)·병률(兵律)·형률(刑律)·공률(工律) 등

육전체제(六典體制)를 갖추었다.

조선왕조는 건국을 눈앞에 둔 공양왕(恭讓王) 4년(1391년) 시중 정몽주의 주관하에서 지정조격(至正條格)과 대명률을 취사선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신율(新律)을 마련하여 올렸다(「증보문헌비고」 권135-1, 형고9, 형서). 그 해 7월 조선건국시의 태조의 즉위교서에 모든 공사범죄(公私犯罪)에 대한 과형(科刑)과 단죄는 대명률에 의거하도록 하였다(「태조실록」 권1-44, 태조 원년 7월 정미). 그 후 태조 4년(1395년) 조준이 김지 등에게 명령하여 이두문(吏讀文)으로 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00여본을 만들어 반포 시행토록 하였다. 대명률직해는 대명률 그 자체는 아니고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개찬한 우리의 일반법인 형법전이다. 반면에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형전은 우리의 고유한 특별법인 형법전이므로 대명률직해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증보문헌비고」에는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대명률은 바로 우리 조정에서 준수해 쓰는 것입니다. 「경국대전」이 이루어지자 대명률이 더욱 밝아졌고, 「속대전」이 이루어지자 「경국대전」이 더욱 갖추어졌습니다. 만약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유사(有司)가 반드시 이 세 책을 연구하고 비의(比擬)⁴⁾하는데, 이제 만약 모두 취하여 열록(列錄)⁵⁾하면 율레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상고해 의거하기가 쉽지 아니하니, 삼전(三典)의 지어 정한 것을 모아서 오형(五刑)의 조례에 따라 서로 참고하고 유(類)로 모아서 원거(援據)에 현혹되고 의단(擬斷)⁶⁾에 미혹되지 아니하게 한 바입니다. 대저 율(律)을 폐한 것과 형(刑)을 특별히 없앤 것은 진실로 열성조(列聖朝)의 인후측달(仁厚惻怛)⁷⁾하여 형옥(刑獄)을 삼가고 인명을 중하게 여기는 뜻이니, 아아! 아름답도다. 삼가 끝에 붙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증보문헌비고 제136권 형고 10, 제율 유기 1).

나. 형의 유형

(1) 태형

태형(笞刑)은 5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대명률직해」 오형명의(五刑名義)에 의하면 경죄를 범한 사람에게 소형장(小荊杖: 작은 가시나무가지로 만든 매)으로서 10대에서 50대까지 치는 형벌로서 5등급이 있으며 10대마다 형이 1등급씩 가감된다고 하였다. 태형(笞刑)에 쓰는 매는 작은 가시나무가지로 만드는데 반드시 가지의 그루터기와 눈마디를 깎아내야 하며 관청에서 내린 교판(較板)을 써서 법(法)대로 규격검사를 하여야 하고 힘줄이나 아교같은 것을 덧붙치지 못한다.

태형의 매의 규격은 대두경(大頭徑)이 2푼(分) 7리(厘)(약 0.8cm), 소두경(小頭徑)이 1푼 7리, 길이 3척(尺) 5촌(寸)(약 106cm)으로 하며 가는 쪽으로 볼기를 친다. 속죄금은 「대명률직해」 명례률(名例律) 5형(刑)에서는 이를 5승포 3필·6필·9필·12필·15필 등으로 정하였다.

4) 견주어 비교함

5) 죽 벌여서 기록함

6) 의심스러운 실마리

7) 마음이 어질고 무던하여 불쌍히 여겨 슬퍼함.

(2) 장형

장형(杖刑)은 5형중 두 번째로 가벼운 형벌이나 유형·도형 등 중의 부가형(附加刑)으로도 집행된다. 「대명률직해」오형(五刑) 명의(名義)에 의하면 장형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대형장(大荊杖: 큰 가시나무가지로 만든 刑杖)으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치는 형벌로서 5등급이 있으며 10대마다 형이 1등급씩 가감(加減)된다. 또 장형에 쓰는 형장도 큰 가시나무가지로 만드는데 반드시 가지의 그루터기와 눈마디를 깎아내야 하며 관청에서 내린 교판(較板)을 써서 법대로 규격검사를 하여야 하고 힘줄이나 아교 같은 것을 덧붙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장형의 장(杖)의 규격은 대두경(大頭徑)이 4푼(分)5리(厘), 소두경(小頭徑)이 3푼5리(약1.1cm), 길이가 3척(尺)5촌(寸)(약 106cm)으로 하며, 가는 쪽으로 불기를 친다(「대명률직해」옥구지도). 속죄금은 「대명률직해」명례률(名例律) 5형(刑)에서는 이를 5승포 18필·21필·24필·27필·30필 등으로 정하였다.

장형의 경우 남형(濫刑)의 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집행관의 자의가 개재될 가능성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국대전」의 형전조에 따르면 관리가 남형하는 경우에는 장1백과 도3년의 형에 처하고 영구히 관직에 임용되지 못하게 하였다.

(3) 도형

도형(徒刑)은 5형의 하나로서 중하기가 사형·유형 다음이다. 관에서 구금하여 소금굽기·쇠다루기 등과 같은 힘든 일을 강제로 시키는 형벌로서 지금의 유기(有期)징역형과 비슷하다. 다만 장형을 병과(併科)하는 점에서 지금의 징역형과는 다르다.

도형에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도(徒) 1년에 장(杖)60대 치는 것 (속동전은 12관이나 5승포 60필로 환산하여 정함), 도 1년반에 장 70대 치는 것 (속동전은 15관이나 5승포 75필로 환산하여 정함), 도 2년에 장 80대 치는 것 (속동전은 18관이나 5승포 90필로 환산하여 정함), 도 2년반에 장 90대 치는 것 (속동전은 21관이나 5승포 105필로 환산하여 정함), 도 3년에 장 100대 치는 것 (속동전은 24관이나 5승포 120필로 환산하여 정함) 등이다.

도(徒)라는 것은 노(奴)라는 뜻이다. 대개 종으로 삼아서 치욕을 주자는 것이다. 노(奴)는 남자가 죄로 말미암아 천예(賤隸)로 된 것이라 하였고 그에게 노역을 시키되 담장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모아 가두어 교화시킨다고 하였다. 또 상죄(上罪)는 3년이 지나서 석방하고 중죄(中罪)는 2년, 하죄(下罪)는 1년이 지나야 석방한다고 하였다.

도형의 일종으로 충군이 있다. 충군은 강제노역의 내용이 군역이며 조선시대에는 도형에 대신하여 충군하게 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도형대신 충군된 때에는 도형기간만큼 복무하고 서방하였다(김기춘, 95)

(4) 유형

유형(流刑)은 5형의 하나로서 중하기가 사형 다음이다. 즉 중죄를 범하였을 때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먼 곳으로 유배하여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게 하는 형벌이다. 즉 대죄인에게는 멀고 황량한 곳으로 추방하거나 해외로 유배하고 그 다음 죄인은 구주(九州)밖, 또 그 다음 죄인은 경기권 밖으로 유배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형은 오늘날의 무기금고형과 비슷하나 반드시 장형(杖刑)을 병과하고 멀리(주로 섬이나 변경지역) 보내는 점이 다르다.

유형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유(流) 2000리(里)에 장(杖) 100대 치는 것(속동전은 30貫이나 5升布 150필로 환산하여 정함), 유 2500리에 장 100대 치는 것(속동전은 33貫이나 5승포 165필로 환산하여 정함), 유 3000리에 장 100대 치는 것(속동전은 36貫이나 5승포 180필로 환산하여 정함) 등이다. 대명률에 규정된 유형의 거리는 우리나라의 국토 넓이상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서 세종 12년에 각도별로 2000리, 2500리, 3000리의 유배지 및 충군처(充軍處)를 정하였다(『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5刑).

(5) 사형

사형은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사형에는 교형(絞)·참형(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같은 사형이라도 교형(絞刑)으로는 시신이 온전하나 참형으로는 머리와 몸통이 분리됨으로 보다 더 냉혹한 중형이었다. 대명률 등의 명례를 오형(五刑) 사형조(死刑條)에서는 참수(斬首)와 교수(絞首)의 두 가지만 규정하였으나 「대명률직해」의 형률·도적(盜賊)·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에서는 능지처사(凌遲處死)를 규정하였고, 또 조선시대의 실제상으로 역적을 다스림에 있어서 능지처사를 시행하였음이 왕조실록에 나타나 있다(『태종실록』권22-39, 태종 11년 11월 계유 및 「중종실록」권43-35 중종 16년 10월 정미). 사형에 대한 속죄금은 대명률(大明律)의 경우 속동전(贖銅錢)은 42관(貫)⁸⁾이었으나 「대명률직해」에서는 이를 5승포(升布) 210필로 환산하여 정하였다. 반역이나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8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10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불치의 병에 걸린 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야만 사형집행을 할 수 있었고 또 90세 이상 자와 7세 이하 자는 비록 사죄를 범하여도 처형하지 아니하였다(『대명률직해』명례를 권1 노소폐질수속).

Ⅲ. 조선시대 조세범처벌 규정

1. 의의

성종 16년(1485년)에 반포된 영세불변의 조종성현으로서 통치의 기본법인 「경국대전」 호전(戶典) 수세조(收稅條)에는 조세범의 처벌에 대해서 단 두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국대전」이 편찬된지 약 261년 후인 영조22년(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 호전(戶典)의 수세조(收稅條)와 양전조(量田條)에는 조세범처벌 규정이 대폭 추가되어 각각 9조문과 12조문으로 늘어나 보다 구체적인 조세범 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속대전」의 편찬한 영조는 조세의 공평과 조세범 처벌에 대한 형평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영조가 호전(戶典)의 제목으로 직접 쓴 “均貢愛民 節用蓄力”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뜻은 “세를 균등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힘을 축적한다.”

8) 조선시대 화폐 단위는 1관(貫)=십량(兩)=백전(錢)=일천문(文)의 십진법을 사용했다.

것으로 조세의 공평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재정수요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과 공정한 과세행정의 확립 및 탈세예방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조세범 처벌 규정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선시대의 전세제도의 변천이다. 조선시대 전세제도는 초기에 답험손실법, 공법, 후기에는 영정법과 비총법으로 변천하였다. 대부분 답험(踏驗)을 담당하는 관리들의 횡포로 세수확보와 공정과 세가 그 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속대전」에 추가된 조세범 처벌 규정의 대부분이 감관(監官)에 관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답험손실법은 고려시대 1391년(공양왕 3)의 전제개혁 때부터 1444년(세종 26) 공법을 시행 할 때까지 시행되었던 수세법의 하나로 전세감면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 또는 손실 답험법이라고도 한다. 손실규정은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막론하고 손실의 정도를 10등분하고, 명년에 비해 수확이 10% 감소할 때마다 전세도 10%씩 감면하여 주되 수확이 80% 이상 감소하면 조는 전액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답험손실법에 많은 폐해가 따르자 세종은 1430년(세종 12)에 상·중·하 3등전에서 그해의 풍흉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1결(結)에 10두(斗)를 징수하는 공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나서 1443년(세종 25) 제2차로 개혁을 시도하여 전국의 토지를 전분오등(田分五等)으로 하고, 연분을 9등으로 구분하는 신정공법(新定貢法)을 1444년(세종 26)에 공포하였다.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 역시 매우 번잡하여 당시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고, 1결의 면적도 종전의 3등전에 비해 축소되었으므로 실지로는 하중년급 6두나 하하년급 4두의 적용이 많아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무시된 채 최저율의 세액이 적용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농지가 황폐되고 농민이 날로 궁핍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세액도 제대로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조종(朝宗)에서는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법제화하여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시키는 영정과률법(永定課率法) 즉, 영정법을 1635년(인조 13)에 제정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세원을 보완하기 위해 1653년(효종 4)에는 종래에 사용하던 수등이척(隨等異尺)⁹⁾법을 폐하고 균일한 양전척(量田尺)¹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정법 역시 결부법으로 생산량을 단위로 한 점에서 보면 지세부과의 합리적인 단위였지만, 20년마다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토지의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부산정이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정법은 연분법을 폐지하여 답험손실에 따른 중간착취를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풍흉과 생산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세액을 고정화하여 매년 납부하게 하여 재정의 위험부담을 농민에게 지우게 됨으로서 효과적인 조세제도는 되지 못하였다. 영정법의 실패로 비총법을 실시하였다.

9) 수등이척 : 토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길이의 자를 사용하는 측량법. 따라서 같은 1결이라 해도 비옥한 토지와 척박한 토지의 경우 그 절대면적이 서로 달랐다. 등급별 절대면적을 보면 1등급 2,986평, 2등급 3,513평, 3등급 4,259평, 4등급 5,423평, 5등급 7,466평, 6등급 11,946평이다.

10) 양전척 : 토지의 등급에 따라 길이가 다른 자를 사용하여 토지를 측량할 때의 복잡함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자를 통일한 것이다.

비총법은 종래의 답험손실법의 일단을 영정법에서 되살린 것으로서, 국가에서 거두어들일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지방에 할당하는 방식의 세법이다. 비총법은 숙종 연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1760년(영조 36) 법제적으로 추인되어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실시되었다. 비총법은 경차관·도사가 그 해의 풍흉을 답험하는 규정은 호조가 필요할 때 임금에게 보고하여 정하되 만약 감사에게 명하여 마감시킬 때에는 그 해 8월에 호조에서 여러 도의 농사형편을 참고하고 이와 상당한 해의 수세총수와 비교(比摠)하여 임금의 재가를 얻으며 관찰사는 가을에 조사한 후에 등급을 나누어 임금에게 보고한다. 각 고을은 도에서 받은 세금면제결수를 토대로 면리에 세금면제결수와 세금부과결수를 정해준다. 이 때는 호조에서 정해준 세금 면제결수와 부과결수의 비율, 각 고을·면·리의 재해를 당한 정도로 나눈 등급, 총 토지결수(結總) 등이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연분방식은 토지세 징수의 기초작업의 하나인 급제운영을 군현 또는 향촌의 말단 행정조직인 면·리·동에 위임하면서 결총제로 운영하는 이른바 공동납적인 징세방식이다.

「대전회통」에는 추가된 조세범처벌 규정은 없다.

2. 조선시대 조세범처벌 규정

가. 경국대전의 규정

「경국대전」호전(戶典) 수세조(收稅條)에는 조세범의 형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과세표준인 쌀 등의 수확량을 재해 등으로 숙여 탈세하는 경우의 처벌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를 담당하는 관원이 부정한 짓을 한 경우 파면하는 규정이다.

- ① 만일 농민이 재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해당 아전, 권농관, 서원(書員) 등이 농민과 공모하여 협잡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도 허락하며, 허위신고를 한 토지 1부(負)에 태형 10대를 적용하는 동시에 매 1부가 올라감에 따라 한 등급씩 올려서 형장 100대까지 친 후 군사로 충원한다.
- ② 허위신고한 토지는 고발한 사람에게 주고 거기서 얻은 이득은 관청에서 몰수한다. 고을원인 경우에는 10부 이상이면 파면시키고 내막을 알고도 협잡을 했을 때에는 임명장을 빼앗고 영원히 등용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률의 적용은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여 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명률에는 조세범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다.

나. 속대전의 규정

(1) 양전조

양전은 전세의 과세대상인 전지(田地)의 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전세의 경우에는 경작자 사정과 자연조건 등으로 항상 그 상태가 변동하므로 조정에서는 20년에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과

세 대상으로서의 토지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경작상태에 따라 정전·속전·강등전·강속전·가경전·화전으로 구분하여 과세지와 면세지로 구분한 것이다.

「속대전」 양전조에 규정된 조세범처벌 규정은 9조문으로 다음과 같다. 이중 ①과 ②는 과세대사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며, 나머지 7조문은 양전하는 감관의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는 양전주체가 조정에서 임명된 관리가 행하며 감관 등의 비리가 많기 때문이다.

- ① 묵은 논밭(陳田)의 경우에도 모두 전주(田主)를 등록하고 전주가 없는 처소에는 무주(無主)로 등록한다. 문적도 없이 허위로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하고 전주로 등록한 경우에는 杖1백과 원지에 정배한다.
- ② 연고가 없는 자로서 그 원전주(元田主)가 원격지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타인의 전지를 자기의 명의로 암암리에 등록한 경우에는 장1백과 3천리유형에 처한다.
- ③ 전지의 등급수(속전이나 가경전등)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 수령이 사실대로 쫓지 아니한 경우에는 拘束訊問하여 죄를 정한다.
- ④ 전지(田地)를 다시 측량할 때에 감관(監官) 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하거나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하거나 또는 전형을 실지와 다르게 하거나 사정으로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에는 매1부에 대하여 태10에서 장1백에 그치고 통산하여 1결¹¹⁾에 달하는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한다. 토호와 경작자가 공모하여 간계를 쓴 경우에는 조관(朝官)을 막론하고 일체로 정죄하고 그 전지가 전면 누락된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시킨다.
- ⑤ 각읍의 전지대장말미(土地臺帳)에는 반드시 해부인(解負人;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후에 검산하여 만약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감관은 누락망모자율(漏落妄冒者律)¹²⁾에 의하여 논죄하고 그것이 과실인 경우에는 한 등을 감하여 논죄한다.
- ⑥ 도감관과 감관은 사대부로써 선발 임용한다. 피임을 기피한 경우에는 도피차역률(圖避差役律)¹³⁾으로써 논죄한다.
- ⑦ 토호가 결부(結負)를 은의 기만하고 그 죄를 모면하려고 노(奴)의 이름으로 경작자로 한 경우에는 조관(朝官)을 막론하고 장1백과 도형 3년에 처한다.
- ⑧ 양전시에 소관인(書員 또는 지시인을 말함)이 민간에게서 收斂하여 횡령한 자(공궤(供饋; 공적 음식 공급)를 칭탁(稱托)하여 술과 고기를 정구하는 것과 같다.)는 은결률(隱結律)로 논죄한다.
- ⑨ 무릇 양전에 관한 범죄인에 대하여는 경중을 막론하고 사면하지 아니한다. 수령으로 파면된 경

11) 토지 면적의 단위에는 결(結)·부(負)·속(束)·파(把)가 있다. 10파가 1속, 10속이 1부, 100부가 1결이다. 1결의 수확량은 지역과 토질에 따라 다르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연해(沿海)의 수전(水田)에는 벼 1,2두를 심으면 소출(所出)이 혹은 10여 석(石)에 이르러 1결의 소출이 많으면 50~60석을 넘고 적어도 20~30석을 내리지 않으며, 한전(旱田)도 또한 매우 기름져서 소출이 아주 많으나, 경기·강원도의 산을 의지한 주군(州郡)에는 비록 1,2석을 심어도 소출이 5~6석에 불과하니, 일체(一體)로 조세를 거둘 수 없음이 분명함이다(증보문헌비고 제148권-전부고(田賦考) 8 조세 1).

12) 고의로 결수(結數)를 줄여서 기록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13) 국가의 부역(賦役)·노역(勞役) 등을 기피(忌避)하려고 피하는 데 관한 법률.

우에는 5년이 경과되어야만 임용될 수 있다.

(2) 수세조

「속대전」 수세조에 규정된 조세범처벌 규정은 모두 12조문으로 다음과 같다. 이중 ①·②·③·⑤·⑦·⑧·⑨의 8조문은 수령·감관·색리등 관리가 부정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며, ②와④의 두 조문은 토호와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수령이나 토호 등의 비리에 관한 조세범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은 그 시대의 사회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토호는 향촌에 토착화한 지배세력으로 대체로 양반의 신분을 지닌 대토지소유자인 토호는 중앙정계와의 연계, 수령이나 아전과의 결탁, 서원이나 향교의 세력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토지점병, 삼정문란, 조세거부, 사시악형(私施惡刑), 잡기편재(雜技騙財) 등 다양한 온갖 무단행위를 향촌에서 전개해 국가의 수취기반을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 또한 토호들은 임진왜란 후 전적(田籍)이 소실된 틈을 이용한 토지를 광점(廣占)하여 대부분 수천·수백 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자신의 노비와 신역(身役)을 도피한 양·천민을 활용하여 지주 경영을 강화했다. 그리고 전정(田政)에서는 아전에게 뇌물을 주어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세금을 적게 내거나, 토지를 숨겨 탈세했다. 그러나 토지측량사업인 양전(量田)이 실시되면 토지의 전품(田品)이 시정되고 은닉된 토지도 드러나 세금을 더 내야 했으므로 토호들은 양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납세자인 농민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⑥의 조문이며, ⑩·⑪·⑫의 3조문은 전체에 해당하는 조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정세에 있어서 각종 면세결 또는 복호와 유래재결(流來災結)을 일일이 조사하여 만약 임의로 결수를 증가한 경우에는 경국대전의 망모전결률(妄冒田結律)¹⁴⁾로 논죄한다. 전지의 지번(地番)을 어긋나게 하는 자는 장1백에 처하고 재상도목을 검산할 때에 술책을 쓴 산원(算員)은 담헌서원 누부율(踏驗書員漏負律)에 의하여 논죄하고 낭청(郎廳)은 불응위율(不應爲律)¹⁵⁾로써 논죄한다.
- ② 토호나 관속배(官屬輩)들이 그의 소경지를 민전(民田)과 함께 기록하여 그 세를 스스로 징수하되 평민으로부터 미두를 더 거두어 그것으로써 자신의 세수에 충당하는 자와 백성의 전결을 빼앗아 강제로 역가(役價; 일한 품삯)를 징수하는 경우에는<속칭 양호(養戶)¹⁶⁾> 빼앗은 양에 따라 논죄해서 장형(杖刑)으로부터 도형(徒刑)·유형(流刑)으로까지 처벌한다.
- ③ 감관이나 서원배(書員輩)가 허위로 결부를 가작(假作)하여 백성의 결을 분징(分徵)한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한다. 수령으로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논죄한다.
- ④ 토호로서 전세를 불납하거나 상납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 1백과 유형3천리에 처한다. 세곡을 징

14) 20년마다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대장을 정비하는 바, 이때 농토를 거짓으로 등기한 사건에 대하여 처분하는 벌칙. 杖100 充軍의 벌이다.

15) 불응위(不應爲)를 처벌하는 형률(刑律). 불응위는 법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윤리 도덕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함.

16) 읍저(邑底)의 관속(官屬)이 작은 면(面)에 사는 백성들에게 결복(結卜)의 값을 미리 거두어 사사roi 자가 받아 먹고는 관청에 바치지 아니하는 것

- 수하여 상납할 때에 세곡의 색깔이 부정(不精)하여 백토의 분말로써 헹잡(挾籾)으로 절구에 취색한 경우에는 감봉차사원(監奉差使員) 및 당해 수령은 제서유원률(制書有遠律)¹⁷⁾로써 논죄한다.
- ⑤ 매년 폐전을 기경 또는 개간한 곳은 일일이 이를 등록하고 호조에 보고하여 규정세액의 반액을 감한다. 이미 개간한 전지라도 황무지로 환원된 것은 수세하지 아니한다. 만약 간계와 허위로 혼잡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령 감관 또는 색리(色吏)는 망모전결률로써 논죄한다.
- ⑥ 진전(陳田)으로 되어 있던 것 중 다시 개간된 곳은 헤아려 전주(田主)로 하여금 자수하게 하고, 전에는 비록 개간지를 진전(陳田)이라고 보고했더라도 자수하면 면죄한다. 만약 자수하지 않고 속이고 숨겨 놓은 것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재해차착례(災害差錯例 또는 재상차착례)에 따라 논죄한다.
- ⑦ 거짓으로 속여서 곡식이 알찬 것을 재해를 입었다고 한 경우에는 10부 이상이면 경작자 및 면·이임(里任)으로서 이에 부동(符同)¹⁸⁾한 자는 장1백 유형3천리에 처하며 감관(監官)·색리(色吏)는 장(杖)100에 처한 후 충군(充軍)한다. 착오로 감축된 미(米)·대두(大豆)가 50석¹⁹⁾ 이상이면 색리(色吏)는 무기한 정배(定配)하고 농간을 부리어 감축(減縮)한 것이 10석에 이르면 알찬 곡식을 재해입었다고 한 것이 10부 이상인 경우의 예에 따라 논죄한다. 묵헌 땅(陳田)을 경작지라 하고, 재해를 입은 땅을 곡식이 충실한 땅으로 한 경우에 그 전지가 50부 이상이면 사무착오를 한 관리는 알찬 곡식을 재해입었다고 속인 것이 10부 이상인 경우의 망모자률(妄冒者律)에 따라 논죄하며 경작자는 용서한다.
- ⑧ 수령(守令)으로서 재해를 당한 결수(結數)를 늘려서 보고하여 초과징수액을 사용(私用)한 경우에는 무기금고(無期禁錮)에 처하며, 실제의 결수를 숨기고 누락시킨 경우에는 유기(有期)로 하되 이는 모두 본률(本律) 외로 시행한다. 수령이 영문(營門)을 기만하고 재와 실을 혼잡해 놓은 경우에는 감사(監司)가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여 논죄하며 경차관(敬差官)·도사(都事)가 사심에 따라 이를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와 죄가 같다.
- ⑨ 수령이 문서 마감후라 청탁하고 여결(餘結)을 사사로이 임의로 처리한 경우에는 비록 민역에 보충하였거나 또는 공용으로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모두 사용(私用)으로써 논죄한다.
- ⑩ 실결(實結)을 숨기고 누락시킨 자는 10결 이상이면 3년, 50결 이상이면 5년, 100결 이상이면 10년 금고(禁錮)에 처한다.
- ⑪ 여결(餘結) 및 은결(隱結)은 자수함을 허용하고 자수한 읍은 전관(前官)과 함께 논죄하지 않으며

17) 임금의 교지(教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유위(制書有違) 조에, “무릇 제서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 하였다.

18) 그런 일에 어울려 한통속이 됨

19) 용량을 재는 제도<量之制>는 10작(勺)을 1홉(合)으로, 10홉을 1되<升>로, 10되를 1말<斗>로, 15말을 소곡평석(小斛平石)으로, 20말을 대곡전석(大斛全石)으로 한다(경국대전 공전 도량형조). 여기에서 석(石)이라고 한 것은 곧 우리말의 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석’은 웅근섬이란 뜻이고 ‘평석’은 보통 정도의 섬이란 뜻인데 조선 말기까지 지방에 따라 20말의 전석을 한 섬으로 치는 데와 15말의 평석을 한 섬으로 치는 데가 있었다. 곡(斛)은 양기(量器) 중에서 가장 큰 것인데 전석을 단위로 삼은 양기를 ‘대곡’이라고 하고 평석을 단위로 삼은 양기를 ‘소곡’이라고 하였다.

- 은폐하였다가 탄로가 난 경우에는 전관(前官)과 더불어 본률(本律)로써 치죄한다.
 ⑫ 전결(田結)을 사매(私賣)한 자는 다소를 막론하고 장률(贓律)로써 논죄한다.

IV.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의 과중과 공정

1. 조세범처벌 형량과 형조의 형량 비교

조선시대 조세범처벌 형량을 「경국대전」과 「속대전」에서 살펴보면 가장 가벼운 형량은 태형인 태 10부터이며, 가장 무거운 형량은 유형(流刑)인 장1백과 유형 3천리이다. 조선시대 조세범을 처벌은 양전 때와 수세 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전(量田)은 20년마다 전지를 다시 측량하는 것으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양전 할 때 감관(監官) 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한 경우,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한 경우, 또는 밭 모양을 실지와 다르게 한 경우, 사사로움에 따라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에는 매 1부에 대하여 태형 10에서 장1백에 그치고 통산하여 1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세(收稅)는 매년 호조에서 그 해의 풍흉을 답험한 후 각 고을·면·리의 재해를 입은 정도에 따른 전지 등급과 총 토지결수에 의하여 세금 면세결수와 과세결수의 비율 정하여 전세를 징수한다. 수세할 때 거짓으로 속여서 곡식이 알찬 것을 재해를 입었다고 한 경우에는 10부 이상이면 경작자 및 면·이임(里任)으로서 이에 한통속이 된 자는 장1백 유형3천리에 처하며 감관(監官)·색리(色吏)는 장1백에 처한 후 충군(充軍)한다. 그리고 토호로서 전세를 불납하거나 상납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3천리에 처한다. 따라서 수세조의 형량은 양전조의 형량보다 10배정도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1>부터 <표 5>까지는 「대명률」·「경국대전」·「속대전」의 형조에 규정된 죄인의 형량과 호조에 규정된 조세범의 형량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태10 형은 조세범으로 전결 1부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인데, 형조는 사채(私債)를 5관 이상을 졌는데 약속을 어기고 3개월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에게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장 1백의 형은 조세범으로 재상을 마감할 때에 전결의 자호(字號)를 어긋나게 짓거나 양전 때에 도감관이나 감관(監官)으로서 싫어하여 피한 자인데, 형조는 사람의 한 눈을 멀게 한 자,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 자, 방화하여 자기의 집을 고의로 태운 자, 호패(號牌)를 차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태 10

법전	죄의 유형	
	형법(형조)	조세범처벌법(호조)
대명률	○ 사채(私債)를 5관 이상을 졌는데 약속을 어기고 3개월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1개월마다 한 등을 가하여 죄가 태 40에 그친다.] ○ 강도·절도의 장물(贓物)인 것을 알면서 1관(貫) 이하를 받아 맡은 자. [10관마다 한 등을 가하여 죄가 장 1백에 그친다.]	
경국대전		○ 만일 농민이 재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해당 아전, 권농관, 서원(書員) 등이 농민과 공모하여 협잡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도 허락하며 허위신고를 한 토지 1부에 태형 10대를 적용하는 동시에 매 1부가 올라감에 따라 한 등급씩 올려서 형장 100대까지 친 후 군사로 충원한다(수세조).
속대전		○ 전지를 다시 측량할 때에 監官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하거나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하거나 또는 밭 모양을 실지와 다르게 하거나 사사로움에 따라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에는 매1負에 대하여 笞10에서 장1백에 그치고 통산하여 1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한다(양전조).

〈표 2〉 장 1백

법전	죄의 유형	
	형법(형조)	조세법처벌법(호조)
대명률	○ 서민(庶民)으로서 노비(奴婢)를 존양(存養)한 자. ○ 조부모·부모가 있는데도 자손으로서 따로 호적을 세워서 재산을 나누어 달리한 자. ○ 아내로서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한 자. ○ 사염(私鹽)을 사서 먹은 자. ○ 창고 문의 자물쇠를 훔친 자. ○ 살인을 피하여 이미 행하였으나, 아직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한 종범(從犯)이 되는 자. ○ 사람의 치아 한 개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를 부러뜨린 자. ○ 사람의 한 눈을 멀게 한 자. ○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 자. ○ 방화(放火)하여 자기의 집을 고의로 태운 자.	
경국대전	○ 수령(守令)으로서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것을 허락하여 시행한 자.	
속대전	○ 호패(號牌)를 차지 아니한 자. ○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였는데, 관리로서 마음을 써서 체포하지 아니한 자.	○ 양전(量田) 때에 도감관(都監官)이나 감관(監官)으로서 싫어하여 피한 자. ○ 재상을 마감할 때에 전결의 자호(字號)를 차착(差錯)한 자(어긋나게 긋는 자)(수세조).

<표 3>에 의하면 장1백에 도3년 형은 조세법으로 토호가 결부를 은의 기만하고 그 죄를 모면하려고 노비의 이름으로써 경작자로 한 자, 형조는 낮에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 과실로 형·자식을 죽인 자, 금은(金銀)을 위조한 자, 호패를 빌거나 빌려 준 자, 방화하여 고의로 제 집을 태우고 이 때문에 관민(官民)의 집 또는 쌓아둔 물건에 연소되게 한 자에게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 4>에 의하면 장 1백에 충군의 형은 조세법으로 각읍의 전지대장말미에는 반드시 해부인(解負人)의 성명을 기입하는데, 추후에 검산하여 만약 착오가 있는 감관, 양전시 기경지와 폐경지를 간계와 허위로 혼잡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령 감관 또는 색리(色吏), 망모(妄冒)로 실경을 재해지로 허위보고한 것이 10부이상의 전지에 대하여 경작자와 면·이(里)·소임(所任)등이 공모한 경우에 감관과 색리인데, 형조는 군관·군인이 종군(從軍)하여 정토(征討)하다가 사사로이 달아나 집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 달아나 있는 것을 두 번 범하였는데 정상을 알고도 감추어 둔 자에게 같은 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장 1백 도 3년

법전	죄의 유형	
	형법(형조)	조세범처벌법(호조)
대명률	○ 관염(官鹽)을 나를 때에 여분의 소금을 몰래 지닌 자. ○ 부(府)·주(州)·현(縣)의 성문(城門) 자물쇠를 훔친 자. ○ 낮에 남의 재물을 빼앗은 자. ○ 마소(牛馬)를 훔쳐서 죽인 자. ○ 남의 지체(肢體)를 부러뜨린 자. ○ 남의 한쪽 눈을 해친 자. ○ 과실로 형·자식을 죽인 자. ○ 금은(金銀)을 위조한 자. ○ 방화(放火)하여 고의로 제 집을 태우고 이 때문에 관민(官民)의 집 또는 쌓아둔 물건에 연소(延燒)되게 한 자.	
경국대전	○ 관리로서 남형(濫刑)한 자. [죽게 한 자는 장(杖) 1백에 처하고 영불서용(永不敍用) 영구히 벼슬시키지 않음]한다.]	
속대전	○ 호적을 만들 때에 가장(家長)으로서 장정 1구(口)를 누락한 자. ○ 호패를 빌거나 빌려 준 자. ○ 절도가 아닌데 다리에 형장(刑杖)을 가한 자. ○ 마소를 사사로이 도살한 자. ○ 제 몸을 스스로 판 자. [산 자도 죄가 같다.]	○ 토호가 결부를 은익 기만하고 그 죄를 모면하려고 奴名으로써 경작자로 한 경우에는 조관을 막론하고 장1백과 徒刑3년에 처한다(양전조). ○ 실결(實結)을 은누(隱漏)한 경우에 그 전지가 10결이상이면 3년금고형에 처하고 50결이상이면 5년금고형에 처하며 1백결 이상이면 10년금고형에 처한다(수세조).

〈표 4〉 장1백 충군

법전	죄의 유형	
	형법(형조)	조세벌치벌법(호조)
대명률	○ 군관·군인이 종군(從軍)하여 정토(征討)하다가 사사로이 달아나 집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 달아나 있는 것을 두 번 범하였는데 정상을 알고도 감추어 둔 자. ○ 경도(京都)에 있는 각위(各衛) 또는 각처의 수어(守禦)하는 성지(城池)의 군인이 달아나는 일을 세 번 범하였는데, 정상을 알고도 감추어 둔 자.	
경국대전		○ 만일 농민이 재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해당 아전, 권농관, 서원(書員) 등이 농민과 공모하여 협잡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도 허락하며 허위신고를 한 토지 1부(負)에 태형 10대를 적용하는 동시에 매 1부가 올라감에 따라 한 등급씩 올려서 형장 100대까지 친 후 군사로 충원한다(수세조).
속대전	○ 평민(平民)으로서 남의 호패(號牌)를 빌어 찬 자. [장형은 없다.]	○ 각읍의 전지대장말미에는 반드시 解負人(해부인은 곧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함)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후에 검산하여 만약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감관은 漏落妄冒자를(장1백·충군)에 의하여 논죄하고 그것이 과실인 경우에는 한 등을 감하여 논죄한다(양전조). ○ 양전시 기경지와 폐경지를 간계와 허위로 혼잡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령 감관 또는 색리(色吏)는 謄모전결를로써 논죄한다(수세조). ○ 망모(妄冒)로 실경을 재해지로 허위보고한 것이 10부이상의 전지에 대하여 경작자와 면 이(里)소임(所任)등이 공모한 경우에 감관과 색리(色吏)는 장 1백에 처하고 충군(充軍)한다(수세조).

<표 5>에 의하면 장 1백의 형은 조세범으로 전지를 다시 측량할 때에 監官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하거나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하거나 또는 전형을 실지와 다르게 하거나 사정으로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에 통산하여 1결에 달하는 경우, 감관이나 서원배(書員輩)가 허위로 결부를 가작(假作)하여 백성의 결을 분징(分徵)한 경우, 망모(妄冒)로 실경을 재해지로 허위보고한 것이 10부이상의 전지에 대하여 경작자와 면 이(里)소임(所任)등이 공모한 경우, 전결을 술수를 써서 줄인 것이

만 10석인 자, 기간(起鬻)한 진전(陳田)은 전지(田地)>을 측량할 때에 전주로 하여금 자수하게 하였는데도 숨긴 것이 50부이상인 자인데, 형조는 낮에 재물을 빼앗되 사람을 상해한 일에 중범이 된 자, 남의 두 눈을 멀게 한 자, 강간을 이루지 못한 자, 방화하여 고의로 남의 빈집 또는 전장(田場)에 쌓아 둔 물건을 태운 자에게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장 1백 유형 3천리

법전	죄의 유형	
	형법(형조)	조세범처벌법(호조)
대명률	○ 모반 대역(謀反大逆)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 ○ 경성 문의 자물쇠를 훔친 자. ○ 강도를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 ○ 낮에 재물을 빼앗되 사람을 상해한 일에 중범이 된 자. ○ 남을 죽이려고 꾀한 일에 중범이 되었으나, 하수(下手)하지 않은 자. ○ 남의 두 눈을 멀게 한 자. ○ 남의 두 지체(肢體)를 부러뜨린 자. ○ 강간(強姦)을 이루지 못한 자. ○ 방화(放火)하여 고의로 남의 빈집 또는 전장(田場)에 쌓아 둔 물건을 태운 자.	
경국대전	○ 역마(驛馬)를 함부로 탄 자.	
속대전	○ 돈을 사사로이 주조(鑄造)하려고 노(爐)를 설치하였으나, 아직 실행하지 못한 자. ○ 남을 죽이고 도망한 사람을 허접(許接)한 자. [절린(切隣)·면임(面任)·이임(里任)으로서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도 죄가 같다.]	○ 전지를 다시 측량할 때에 監官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하거나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하거나 또는 전형을 실지와 다르게 하거나 사정으로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에 통산하여 1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한다(양전조). ○ 감관이나 서원배(書員輩)가 허위로 결부를 가작(假作)하여 백성의 결을 분징(分徵)한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流刑)3천리에 처한다(수세조). ○ 망모(妄冒)로 실경을 재해지로 허위보고한 것이 10부이상의 전지에 대하여 경작자와 면 이(里)소임(所任)등이 공모한 경우에는 모두 장 1백과 유형삼천리에 처한다(수세조). ○ 전결을 술수를 써서 줄인 것이 만 10석인 자(수세조). ○ 도로 기간(起鬻)한 진전(陳田)을 측량할 때에 전주(田主)로 하여금 자수하게 하였는데도 숨긴 것이 50부(負) 이상인 자(수세조).

2.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의 과중

조선시대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조세범처벌 규정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다. 하나는 형량의 과중이며, 다른 하나는 형 집행의 공정이다. 조세범에 대한 형량의 과중은 하나의 당시의 문헌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또 하나는 현재 형법의 형량 및 조세범처벌법의 형량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조선초기에는 조세범에 대해서 극형을 처한 경우가 있었다. 「증보문헌비고」 형고(刑考)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전결을 속여서 쌀 몇 말을 탈세하였는데 극형인 효시형(梟示刑)에 처하도록하여 조세범 처벌이 매우 과중함을 알 수 있다.

「인조 6년(1628)에 정방 등에게 사형(死刑)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부제학 정경세가 아뢰기를, “엎드려 형조의 계목(啓目)²⁰⁾을 보건대, 공주에 사는 정방 등 여섯 사람이 전결(田結)을 속이고 숨겨서 쌀 몇 말을 도둑질해 먹은 일로 아울러 가까운 사례에 견주어 효시하도록 청하여 이미 윤희를 받았습니니다. 이 무리의 간사하고 외람된 범죄는 지극히 통분하여 죄가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인명은 지극히 소중하여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성왕(聖王)이 형벌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의 법전에, 비록 십악(十惡)²¹⁾의 대죄로 이미 승복(承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계복(啓覆)하여 형을 집행하게 하였으니,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는 뜻은 지극히 자세하게 살피고 슬프게 여김이 대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진소(陳疏=상소)로 인하여 해조(該曹)에서 나무라고 배척하는 혐의로움을 피하여 형조(刑曹)로 옮기도록 청하였는데, 형조에서 갑자기 효시(梟示)하도록 청하니, 2년 동안 지체한 옥사를 짧은 판결문으로 처단하면 쾌하기는 쾌하다고 하더라도 모르기는 하겠습니니다만, 성왕의 죄인을 신중하게 심의하는 도리와 조종의 심극(審克)²²⁾하는 법에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증보문헌비고 제134권 형고(刑考) 8)».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조세범의 최고 형량은 유형인 장1백에 유형3천리 형이다. 유형은 오늘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벌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다음의 「경세유표」지관수체의 내용을 보면 조세범에 대한 장1백에 유형3천리 형 역시 과중한 형벌이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속대전」에 이르기를 “결실이 잘된 밭을 재해지로 하여 함부로 허위 보고한 것이 10부(負) 이상이면 작인(佃夫; 경작자) 및 면·리의 임원으로 공모한 자는 다 장형 100도를 치고 3,000리 먼 땅으로 귀양보내며,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장형 100도를 치고 군대에 편입시킨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해명하기 곤란한 사기에 대하여 극히 엄중한 형을 가하려 하니 이것이 법이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이며, 반드시 위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는 헛되이 공갈하는 말을 퍼뜨리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이다. 백성은 항상 죄를 범하고 나라에서는 이를 항상 극형에 처한

20) 조선시대 중앙관청에서 임금에게 직접 써서 올리던 문서양식의 하나

21) 십악(十惡): 《대명률(大明律)》에 정한 열 가지의 큰 죄. 당률소의(唐律疏義)에 의하면,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을 말하는데, 사유(赦宥)에서 제외되었음.

22) 죄상을 빠짐없이 조사함

다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며, 백성은 항상 죄를 범하고 나라에서는 항상 용서한다면 백성들은 법을 장난감으로 여길 것이다. 범죄를 적발하지 못하고 방임하여 둔다면 백성들이 속으로 코웃음을 칠 것이며, 이미 적발하고도 또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백성들이 방자해질 것이다. 무릇 이와 같은 현상들은 나라가 크게 혼란해지는 연유이며 기율과 제도가 크게 파탄될 것이니 이는 옳은 법제가 아니다(경세유표 제7권, 지관수제, 전제 8).

<표 6>은 조선시대와 현대의 죄 및 형량을 비교한 것이다. 죄와 형량은 시대와 사회현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표는 조세범의 최고형량이 현대의 조세범처벌법상의 형량 및 형법상의 다른 범죄의 형량과 비교하여 과중하는지만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비교 대상 범죄는 조선시대 경국대전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면죄로서 현 조세범처벌법과 형법과 비교 가능한 조세포탈범·방화범·상해범으로 하였다.

〈표 6〉 조선시대와 현대의 죄 및 형량 비교

죄의 유형	조선시대의 형량	현대의 형량
조세포탈범	<u>장1백과 유형 3천리</u> ○ 전지를 다시 측량할 때에 監官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하거나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하거나 또는 전형을 실지와 다르게 하거나 사정으로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에 1결에 달하는 경우. ○ 망모(妄冒)로 실경을 재해지로 허위보고한 것이 10부이상의 전지에 대하여 경작자와면 이(里)소입(所任)등이 공모한 경우	<u>3년 이하의 징역</u> ○ 소득세 등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
방화범	<u>장1백과 유형 3천리</u> ○ 방화(放火)하여 고의로 남의 빈집 또는 전장(田場)에 쌓아 둔 물건을 태운 자.	<u>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u>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4조①)
상해범	<u>장1백과 유형 3천리</u> ○ 남의 두 눈을 멀게 한 자. ○ 남의 두 지체(肢體)를 부러뜨린 자.	<u>7년 이하의 징역</u>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57조①)부칙

<표 6>의 조선시대 조세포탈범·방화범·상해범의 죄는 형량이 장1백과 유형 3천리로 같은 것이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최고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조세범처벌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화범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최고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형법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해범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최고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형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조세법 처벌은 현대보다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조세법처벌 규정이 죄에 비해 과중하다는 것을 조선시대 조세법처벌 형량에 따른 조세 포탈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살펴본다.

양전시 감관(監官) 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한 경우,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한 경우, 또는 밭 모양을 실지와 다르게 한 경우, 사사로움에 따라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에는 매 1부에 대하여 태형 10에서 장1백에 그치고 통산하여 1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 후기 전지 1결의 전세는 약 4두(40되)이기 때문에 1부당 전세는 0.4되 정도이다²³⁾. 이를 현재의 쌀 가격으로 환산하면 1두는 약 7,138원 정도이므로 1되에는 약 713원이다²⁴⁾. 따라서 전지 1부당 전세로 약 285원 정도를 숨기거나 누락한 경우 태형 10에 처하였다. 오늘날의 벌금에 해당하는 속죄금은 5승포 3필이며 5승포 1필은 2냥 정도이다. 쌀 1섬의 가격이 6냥 정도이므로 이 속죄금을 현재의 가치는 약 47,589원 정도이다. 그리고 양전시 사사로움에 따라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 1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결의 전세는 4두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28,552원 정도이다(전답 1결에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약 28두로 계산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199,864원 정도이다). 속동전은 36관이나 5승포 180필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2,855,340원 정도이다.

수세기 거짓으로 속여서 곡식이 알찬 것을 재해를 입었다고 한 경우에는 10부 이상이면 경작자 및 면·이임(里任)으로서 이에 한통속이 된 자는 장1백 유형 3천리에 처하며 감관(監官)·색리(色吏)는 장(杖) 100에 처한 후 충군(充軍)한다. 그리고 토호로서 전세를 불납하거나 상납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 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한다. 따라서 수세조의 형량은 양전조의 형량보다 10배정도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 수세기 거짓으로 속여서 곡식이 알찬 것을 재해를 입었다고 한 경우에는 10부 이상이면

23) 조선 후기 농민이 납부하는 조세는 전답 1결당 약 28두로 전세·대동·삼수미가 20여 두이고 나머지는 부가세 등 이었다(김덕진, 1999. pp.62-65).

24) ① 미곡으로 환산한 동전의 구매력은 1678년 1석에 6냥으로 공시된 쌀값이 다음해에 그 절반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80년대에 안정되었다. 그것은 1696년 이래 수년간 10냥을 돌파하는 수준으로 폭등하였다가 그 후 하락추세로 접어들어 아마도 1710년대 전반에 5냥선을 밑돌고 20년대 후반에 최저 수준인 3냥선에 머물렀다. 30년대 쌀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40년대 중반에 경미하게 상승하였다. 그것은 60년대와 그 전후에 상당히 상승하여 70년대에는 5냥선을 돌파하여 80·90년대에는 5~6냥의 수준에 머물렀고, 19세기초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이현창, 1999.12.)

② 조선시대 양을 재는 도량형은 승(斛)－升(되)－斗(말)－石(섬)이라고 하는데 10홉이 1되(升), 10되가 1말, 1섬은 15두인 경우도 있고(平石) 20두(全石)인 경우도 있다.

③ 구 1석(섬) = 20두, 신 1석 = 구 2석(신 석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후 같은 도량형 단위임), 백미 신 1석 = 144kg(차명수·이현창, 2004.6)

④ 2004년 쌀 농가판매가격 158,632원/80kg (2005년 농림업 주요통계)

⑤ 조선시대 기준 1석의 현재가치 : $(158,632\text{원}/80\text{kg}) \times 144/2 = 142,768\text{원}$
1두의 현재가치 : $142,768\text{원}/20 = 7,138\text{원}$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답 10부의 전세는 4되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2,855원 정도이다. 속동전은 36판이나 5승포 180필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2,855,340원 정도이다. 조선시대 조세법처벌 형량에 따른 조세포탈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살펴 결과 조선시대 조세법처벌 규정이 죄에 비해 과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시대적 시대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선시대 조세법처벌의 공정

모든 법의 집행은 공평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특히 조세는 공평과세를 중요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법의 집행과 조세법의 처벌 역시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원칙은 조선시대의 법 집행 역시 마찬가지다. 다음의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공평한 법 집행을 실현하는 것이 근본적인 법 원칙임을 알 수가 있다.

「판의금부사 이귀(李貴)가 차자²⁵⁾를 올리기를, “법이란 천하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니 시간의 선후에 따라 다를 수 없으며 친소(親疎)²⁶⁾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阜隲)가 법을 집행하면 천자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면할 수 없으며, 장석지(張釋之)²⁷⁾가 법을 고수하면 천자의 위엄으로도 뺄 수가 없습니다(인조 022 08/05/17(병신)).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다음 내용을 보면 조세법의 처벌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과세표준인 곡식의 결실을 수령 등 잘 못 조사 보고한 경우 재결(災結)을 실결(實結)로 하여 국가에 이익에 되면 죄를 가볍게 하고, 실결을 재결로 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면 죄를 무겁게 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을 해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재상법(災傷法)은 경술년에 대신들의 의논으로 인하여 조종(祖宗)의 법을 다 고쳤는데 유익함은 매우 작고 손실됨이 매우 커서 민간의 원망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재결(災結)을 실결(實結)로 한 자는 백성에게 손해를 입혀 국가를 이롭게 한 것이므로 50부(負・卜)가 되면 파면(罷免)하고 실결을 재결로 한 자는 국가에 손실을 주어 백성을 이롭게 한 것이므로 10부가 되면 파면하는 것이 대전(大典)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은, 실결을 재결로 한 것은 옛 법 그대로 따르고 재결을 실결로 한 것은 비록 50복이 될지라도 공죄(公罪)로 논하여 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령들이 죄 받을까 두려워서 으레 재결을 실결로 보고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벼 한 묶음 수확하지 못하였어도 그 세(稅)는 다 바쳐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일체 조종의 옛 법을 따르게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하였다(명종 011/07/03(기축)).

이 경우 다음 내용과 같이 허위보고한 결수는 합산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령 등이 전세 부과에 자유재량을 줌으로써 조세의 문란을 가져왔다고 본다. 「재상(災傷)에 대한 일은 전일 하

25)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26) 친함과 친하지 아니함

27) 장석지(張釋之)는 중국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온 인물이다. 십팔사략에서 그는 “재판관은 천하의 일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하셨을 때에 이미 의논해 아뢰었습니다. 실결(實結)을 재결(災結)로 10부 이상, 재결을 실결로 50부 이상을 허위 보고한 자는 법에 따라 파직시켜야 하지만, 실결을 재결로 한 것이 8~9부, 재결을 실결로 한 것이 48~49부가 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파직시킨다는 것은 법례가 없습니다(중략). 법을 만든 이후로 재상 때문에 파면당한 자는 많았지만 지금처럼 합산하여 파면된 자는 없었습니다(중략). 하니, 윤인경에게 답하기를, “삼공의 의논이 모두 같으니 수령 등을 파직시키지 말라.” 하였다」(명종 004 01/11/17(경오)).

「경세유표」에 실린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법의 처벌이 법대로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부과 및 징수제도의 미비로 과세가 정확히 이루어 질수 없었고, 조세범처벌 규정 역시 미비하고 너무 무거워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부법을 이용하여 임의로 엮어매기도 하고 임의로 에두르기도 하고 임의로 깨치기도 하고 임의로 마스기도 하고 하여 임의로 협잡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 놓고 임의로 뒤범벅을 만들고 있으니 이주(離朱)를 시켜도 밝혀 낼 수 없고 예수(隸首)를 시켜도 산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뒤쫓아 법을 만들기를 “이를 위반하는 자는 장1백과 3천리 먼 땅으로 귀양보낸다”고 하니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랴? 이 법률을 제정한 이후 원체 지금껏 한번도 그 법을 시험해 본 적이 없다. 설사 천만 명 속에서 어쩌다가 한 사람을 처벌한다 할지라도 위재(僞災)의 작간을 방지하지는 못할 것이니」(경세유표 제7권, 地官修制, 田制 8)

V. 결 론

한 나라의 조세는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재정수요충족을 위한 제도이다.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역시 조세의 근본 목적인 재정수요충족을 위하여 전세(田稅)를 근간으로 하여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의 변화는 우선적으로 재정수요충족의 측면을 중요시하면서 조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법체제의 미비와 관리들의 농간 등으로 항상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납세자인 농민의 피해가 많았다. 그 결과 조세법의 조세범처벌 규정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성종 16년(1485년)에 반포된 영세불변의 조종성헌으로서 통치의 기본법인 「경국대전」 호전 수세조에는 조세법의 처벌에 대해서 단 두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국대전」이 편찬된지 약 261년 후인 영조22년(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 호전의 수세조와 양전조에는 조세범처벌 규정이 대폭 추가되어 각각 9조문과 12조문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조세범처벌 규정 대부분이 답험(踏驗)을 담당하는 관리와 수세하는 수령 그리고 대토지를 소유한 토호의 전세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그만큼 조세에 따른 범죄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속대전」 양전조에 규정된 조세범처벌 규정은 9조문으로 다음과 같다. 이중 7조문은 양전하는 감관의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는 양전주체가 조정에서 임명된 관리가 행하며 감관 등의 비리가 많기 때문이다. 「속대전」 수세조에 규정된 조세범처벌 규정은 모두 12조문 중 8조문은 수령·감

관·색리등 관리가 부정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며, 두 조문은 토호와 관련된 것이다.

조선시대 조세범처벌 형량을 「경국대전」과 「속대전」에서 살펴보면 가장 가벼운 형량은 태형인 태 10부터이며, 가장 무거운 형량은 유형(流刑)인 장1백과 유형 3천리이다. 조선시대 조세범을 처벌은 양전 때와 수세 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양전할 때 감관(監官) 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한 경우,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한 경우, 또는 밭 모양을 실지와 다르게 한 경우, 사사로움에 따라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망모한 경우에는 매 1부에 대하여 태형 10에서 장1백에 그치고 통산하여 1결에 달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장 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세할 때 거짓으로 속여서 곡식이 알찬 것을 재해를 입었다고 한 경우에는 10부 이상이면 경작자 및 면·이임(里任)으로서 이에 한통속이 된 자는 장1백 유형3천리리에 처하며 감관(監官)·색리(色吏)는 장1백에 처한 후 충군한다. 그리고 토호로서 전세를 불납하거나 상납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 1백과 유형3천리에 처한다.

조선시대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조세범처벌 규정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다. 하나는 형량의 과중이며, 다른 하나는 형 집행의 공정이다. 조선초기에는 조세범에 대해서 극형을 처한 경우가 있었다. 「증보문헌비고」 형고(刑考)에 의하면 전결을 속여서 쌀 몇 말을 탈세하였는데 극형인 효시형(梟示刑)에 처하도록하여 조세범 처벌이 매우 과중함을 알 수 있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조세범의 최고 형량은 유형인 장1백에 유형3천리리 형이다. 유형은 오늘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별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이 역시 과중한 형벌이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조세포탈범·방화범·상해범의 죄는 형량이 장1백과 유형 3천리로 같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최고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조세범처벌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화범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최고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형법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해범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최고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형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조세범 처벌은 현대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양전시 감관(監官) 등이 기경전을 폐경전으로 한 경우, 폐경전을 기경전으로 한 경우 등이 통산하여 1결에 달하는 경우에는 장1백과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결의 전세는 4두로 현재의 쌀가치로 환산하면 약 28,552원 정도이다(전답 1결에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약 28두로 계산한 경우는 199,864원 정도이다).

수세기 거짓으로 속여서 곡식이 알찬 것을 재해를 입었다고 한 경우에는 10부 이상이면 경작자 및 면·이임(里任)으로서 이에 한통속이 된 자는 장1백 유형3천리리에 처하며 감관(監官)·색리(色吏)는 장(杖)100에 처한 후 충군(充軍)한다. 그리고 토호로서 전세를 불납하거나 상납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 1백과 유형3천리에 처한다. 따라서 수세조의 형량은 양전조의 형량보다 10배정도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 전답 10부의 전세는 4되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2,855원 정도이다. 이와같이 조선시대 조세범처벌 형량에 따른 조세포탈 금액을 현재의 쌀가치로 환산하여 살펴 결과 조선시대 조세범 처벌 규정이 죄에 비해 과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시대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공평한 법 집행을 실현하는 것이 근본적인 법 원칙임을 알 수가 있다.

「판의금부사 이귀(李貴)가 차자²⁸⁾를 올리기를, “법이란 천하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니 시간의 선후에 따라 다를 수 없으며 친소(親疎)²⁹⁾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요(皋陶)가 법을 집행하면 천자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면할 수 없으며, 장석지(張釋之)³⁰⁾가 법을 고수하면 천자의 위엄으로도 뺄 수가 없습니다(인조 022 08/05/17(병신)).”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세법의 처벌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과세표준인 곡식의 결실을 수령 등 잘 못 조사 보고한 경우 재결(災結)을 실결(實結)로 하여 국가에 이익에 되면 죄를 가볍게 하고, 실결을 재결로 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면 죄를 무겁게 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을 해하였다. 또한 「경세유표」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법의 처벌이 법대로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전세부와 및 징수제도의 미비로 과세가 정확히 이루어 질수 없었고, 조세범처벌 규정 역시 미비하고 너무 무거워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은 불완전한 전세제도와 조세법에 대한 과중한 처벌규정, 그리고 관리와 귀족 등의 조세저항 등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본 논문과 같이 조세사를 세무학적 접근에서 연구하는 것이 활발히 일어났으면 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28)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29) 친함과 친하지 아니함

30) 정위(廷尉) 장석지(張釋之)는 “재판관은 천하의 일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 십팔사략

참고문헌

- 經國大典. 1993. 法制處 譯註, 韓國法制研究院.
- 大典會通 研究: 戶典·禮典編. 1994. 한국법제연구원
- 續大典. 1965. 法制處 編. 法制處.
- (국역)經世遺表 I - IV. 1977-1979. 丁若鏞 著; 李翼成 譯. 민족문화추진회.
- (국역)만기요람 I - III. 1971. 민족문화추진회 編. 민족문화추진회.
- (譯註)牧民心書 I - V. 1985. 丁若鏞 著; 茶山研究會 譯. 創作과 批評社.
- (국역)증보문헌비고: 재용고·전부고1-2. 1988-199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朝鮮田制考. 1940. 朝鮮總督府中樞院調查課 編, 朝鮮總督府中樞院調查課, 昭和15.
- 姜制勳. 1998. “朝鮮初期의 田稅貢物”. 歷史學報 제158집: 63-101
- 김덕진. 1999.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62-65
- 金雙圭. 1998. “朝鮮前期의 陳田收稅問題”. 歷史教育 제66집: 67-97
- 김홍식. 1982.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기본구조」. 박영사: 17-20
- 金洪春 編著. 1990. 「朝鮮時代刑典: 經國大典刑典을 中心으로」. 三英社.
- 朴道植. 1995. “朝鮮前期 8結作貢制에 관한 연구”. 韓國史研究 제89집: 25-107
- 안병욱. 1989. “18세기말 19세기 전반 부세수취와 향촌사회의 동향”. 동양학학술회의 강연초: 402
- 신홍재. 1987. “조선시대 홀형에 관한 고찰”. 矯正 02: 23-37
- 오기수. 2001. “조선전기의 전세 감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7호: 161-190
- 오기수. 2005. “조선후기의 전세 감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22권 3호: 33-60
- 오일주. 1992. “조선후기 국가재정과 환국의 부세적 기능의 강화”. 실학사상연구 제3집
- 李景植. 1980. “朝鮮前期 職田制의 運營과 그 變動”. 韓國史研究 제28집: 69-107
- 李憲稔. 1999. “1678-1865년간 貨幣量과 貨幣價値의 推移”. 經濟史學 27호: 3-45
- 이흥직편. 1997. 「국사대사전」. 학원출판공사.
- 정은경. 1991. 「조선후기 부세수취제도와 향임층,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2-62
- 차명수·이현창. 2004. “우리나라의 논 가격 및 생산성, 1700-2000” 「經濟史學」, 36호: 3-45
- 한국역사연구회. 1997. 「조선시대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2000.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관한 연구: 恤形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편. 「국역조선왕조실록」. 증보판 CD-ROM

A Study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in The Lee Dynasty

Ki-Soo Oh*

—〈Abstract〉—

The change of tax system in Lee Dynasty was made preferentially in the aspects of financial demand satisfaction and tax obligation propriety. However, many negative elements such as unprepared tax system as well as management's wicked scheme brought much damage to the tax payers like peasantry. As a result, the tax evader's punishment act had to be reinforced.

There are just two prescribed clauses for the tax evader's punishment in the tax gathering article in Ho Jeon of Gyeong Kuk Dae Jeon declared in 1485 by King Seong Jeong. 9 clauses and 12 clauses had been dramatically added respectively for the tax evader's punishment in the tax gathering articles and the land survey articles in Ho Jeon of Sok Dae Jeon in 1746 by King Young Jo 261 years since Gyeong Kuk Dae Jeon was compiled.

According to the records of Gyeong Kuk Dae and Jeon Sok Dae Jeon for the punishment sentence of tax evader's punishment in the Lee Dynasty, the least sentence is 10 whippings and the most one is 100 floggings and 3,000-ri's banishment. The stipulation reveals that in case of an inspector's land survey of regarding arable land as wasteland, a total of one Gyel-wasteland deceived as arable land means 100 flogging and 3,000 banishment

The farm tax of one Gyel is four du which corresponds to 28,552 won in present rice value. (if the total farm tax for one Gyel is 28 du, it represents 199,864 won). The punishment for tax evaders, incendiaries and injury inflictors is 100 flogging and 3,000 banishment in Lee Dynasty.

In case of tax evaders, maximum 100 floggings and 3,000 banishment were prescribed in Lee Dynasty's punishment act, on the other hand, today's tax evader's punishment act stipulates less than 3 year's imprisonment. In case of incendiaries, maximum 100 floggings and 3,000 banishment were prescribed in Lee Dynasty's punishment act, on the other hand, today's criminal law stipulates life imprisonment or more than 3 year's imprisonment. In case of injury inflictors, maximum 100 floggings and 3,000 banishment were prescribed in Lee Dynasty's punishment act, on the other hand, today's criminal law stipulates less than 7 year's imprisonment.

In conclusion, the tax evader's punishment in the Lee Dynasty had not been executed with justice because of defective farm tax system, heavy punishment act for tax ev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and aristocracy's resistance to tax and so on.

<Key words> history of tax in Lee Dynasty, farm tax, tax evader's punishment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ax & Accounting Information, Kimpo College